

만화의 성(性) 묘사를 외설물로 인정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노골적인 성(性) 표현이 있는 만화를 판매했다고 출판사 「松文館」의 사장인 貴志元則 피고를 외설도화 판포(頒布)죄로 재판 중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 만화의 성 묘사를 외설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만화가 외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처음으로 다투어진 재판은 피고를 유죄로 판결, 150만 엔의 벌금을 명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또한 외설물의 반포를 처벌하는 형법 175조가 위헌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도 물리쳤다.

「松文館」이 2002년에 출판한 만화책 「밀실」(密室)의 외설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04년 1월 13일 貴志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005년 6월 16일의 도쿄고등법원 2심 판결은 피고를 유죄로 판시했으나 만화책의 성 묘사는 “실사(實寫) 표현물의 외설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벌금 형으로 감형했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6월 26일자) □

슈퍼모델 Caprice, 『Sun』 지에 소송 제기

슈퍼모델 Caprice가 『The Sun』지와 해당 신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십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aprice는 “진료중인 Caprice”과 “Caprice 최근 Priory

병원 가다”라는 1면 헤드라인 기사와 2면, 3면에 연속 게재된 기사들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The Sun』지는 지난 2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Caprice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Caprice는 이튿날 “Caprice 스키 활강코스에 있다”와 “모델, 스키 타기 위해 치료 관두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 중이다.

Caprice는 기사가 자신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이전부터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인기가 한참 떨어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Priory병원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지 않고 맘 편하고 무책임하게 스키나 타러 갔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술독에 계속 빠져있을 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aprice는 기사가 그녀의 개인적·직업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Caprice는 “법원이 기사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News Group International 발행인이 나에게 계속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유사 기사의 보도 금지 명령과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Press Gazette 2007년 6월 7일자) □

2심에서도 스냅사진의 저작권 인정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자신이 촬영한 전(前) 남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서적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판원인 角川그룹 퍼블

리싱(구 角川서점)과 저자를 상대로 출판금지 및 11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知財고등법원 제2부는 “스냅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 1심에 이어 출판금지를 인정하고 배상액도 45만 엔에서 85만 엔으로 증액했다. 상고가 없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보버트 파이팅 씨의 저서 「도쿄 아웃사이더즈 도쿄 언더월드Ⅱ」로, 2007년 1월 16일의 도쿄지방법원 판결은 동 서적의 출판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진의 무단복제물을 반포한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6월 26일자) □

월간지 『Cicero』에 대한 수색·압수는 위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법정은 지난 2월 27일, 7대1로 월간 평론지 『Cicero』 편집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압수 수색의 계기는 동지 2005년 4월호에 게재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테러리스트 ‘아브무사브 자르카위’에 대한 기사 때문이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S가 기고한 이 기사에는, 표지에 「비밀사항」이라고 적힌 연방형사국의 보고서(04년 9월 6일자)의 상세한 인용(연방정보국이 감시하고 있는 자르카위의 몇 개의 전화번호, 독일 내 지원자의 여러가지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형사국은 05년 6월 23일 직무상의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으나 내부조사에서조차도 누설한 직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형법 353b조 1항에 의하

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 그것에 의해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츠담 검찰국은 8월 31일 기사의 집필자 S와 『Cicero』편집장 W에 대해 비밀누설방조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며, 포츠담 구법원은 검찰국의 요청에 따라 베를린 시내의 S의 자택과 포츠담 시내의 『Cicero』 편집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명했다.

압수 수색은 9월 12일에 있었으며, 외국출장 중의 S의 자택에서는 유명 정치인 아들의 탈세사건, 구(舊) 동독기업민영화와 관련된 정계 의혹 등 다수의 자료들이 압수되었다. 편집부의 수색에서는 편집장 W에 의해 당해 기사와 관련한 CD-ROM과 전자메일의 프린트 아웃이 임의로 제출되었다. 또 W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사를 담당했다가 퇴직한 편집자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복사되었다.

W는 압수 수색을 인정한 포츠담 구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포츠담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 당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저널리스트에게 공표를 이유로 비밀누설방조로 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컴퓨터에 보존된 데이터를 복사·압수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압수 수색을 인정한 포츠담 구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포츠담 지방법원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하드디스크 속의 데이터를 복사하여 압수한데 대한 항고를 기각한 포츠담 지방법원의 결정은 실효적 권리보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비용에 관한 판단을 위해 포츠담 지방법원에 반려되었다.

(『신문연구』, 2007년 6월호 pp. 52~55) □